

기타



1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의 원외처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특정기호 'F010'을 기재합니다.
- ※ 약국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확인은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'F010'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2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와 타지원금이 (전액지원 되는 항목 내에서) 중복 발생할 경우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질병별로 분리청구하며, (1순위) 희귀난치성질환 지원, (2순위)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, (3순위) 긴급복지 지원순입니다.



(기획, 총괄) 질병관리본부 에이즈·결핵관리과 T. 043-719-7915/7315
 (청구, 심사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T. 1644-2000
 (지원금지급)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(국고지원금 지급) T. 02-3270-9825

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

잠복결핵감염 치료비
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.



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접근성을 높이고, 선제적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

1 <지원대상>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.

2 <지원범위>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 이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진찰료, 검사비(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제외, '많이 묻는 질문 ①' 참조), 약제비, 부작용 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가 해당됩니다. 단,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 <지원방법> (보험차종별로)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어떻게 지원 받나요?
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는 요양기관(약국포함)에 치료비를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진료(조제)를 받습니다. (단, 요양급여항목에 해당하며,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항목이나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)

항 목	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	요양기관(약국 포함)
급여	무료 (지불 금액 없음)	진료비(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)를 심평원에 청구,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음
비급여·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	지불	해당 없음

-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(1종, 2종)의 경우 요양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하고, 본인이 직접 「진료비 영수증」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본인부담금을 신청·환급 받습니다.

4 <시행일자>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
-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(7월 1일 이후 진료(조제)분 부터 적용되며, 7월 이전 진료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.)

요양기관의 청구 방법(병의원, 약국 해당)



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명세서는 무엇인가요?

-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명세서(의과·약국)이며, 정보통신망·전산 매체, 서면청구 모두 적용됩니다.

2 관련 코드는 무엇을 사용하나요?

- 상병코드(Z20.1)와 특정기호(F010)를 **동시 기재**하여 청구해야 합니다.

- * 통계청의 제7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(2016.1.1 시행) 시 상병코드 신설 예정으로, 확정 시 추후 재안내
- * 심평원은 상병코드(Z20.1)와 특정기호(F010)가 모두 기재된 경우만 심사하며, 그 외 불능처리

3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진료분인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?

- 분리청구 해야 합니다. * 명세서 「구분자」 기재 : 특정내역 MT001(상해외인) Q

많이 묻는 질문



1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한 검진비도 지원되나요?

- 아니요, 질병관리본부 결핵 검진·조사사업에서 잠복결핵감염을 검진하는 경우에 한해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합니다.

* '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'(http://is.cdc.go.kr)에 등록·관리되는 가족접촉자검진사업·청소년결핵집중관리사업·결핵역학조사사업의 참여 대상 (상기사업 외 잠복결핵감염을 검진하는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)

-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은 특정기호(F009)로 하며,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은 특정기호(F010)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.

2 결핵진료지침에 의거하여, 영유아에서 투베르쿨린검사(TST)나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(IGRA)의 양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가 지원되나요? (A)생후 4주 미만 신생아에서 TST 검사 전 최소 3개월, (B)생후 4주 이후~24개월 미만(BCG미접종 유아는 60개월 미만)에서 1차 TST 결과 음성인 경우 2차 TST 까지 window period 동안)

- 예, 지원됩니다. 이 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의 청구방법과 절차는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. : 상병코드(Z20.1)과 특정기호(F010)를 동시 기재하여 청구.